

우크라이나의 자원개발법제 개요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I. 서론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로 독립국가가 된 우크라이나 공화국(이하 ‘우크라이나’)은 1992년 2월 10일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올해로 수교 20년을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그 동안 경제분야에서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¹ 이중과세방지협정,² 세관협정 등의 다양한 양자간 조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경제외교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 누계액은 2012년 6월 현재 2억 4,100만 달러, 58건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제조업이나 대형유통업 분야에 대한 진출사례도 전무하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크라이나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투자³는 물론 교역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2012년 1~8월 대 우크라이나 수출규모는 정점에 이르렀던 2008년에 비하여 60%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옥한 흑토로 덮인 평야지대, 4,500만 명의 소비인구, 높은 교육수준, 풍부한 천연자원 등 독립국가연합(이하 ‘CIS’) 국가 중에서도 특히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철광석, 마그네슘, 망간, 갈륨, 티타늄스펀지, 선철, 일미나이트, 석탄, 우라늄 등의 전략광물의 부존량이 높다.⁴⁵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자원개발 투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⁶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CIS⁷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오해가 있으나, 자원개발을 포함한 법적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위험을 과장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투자 관련 규제와 자원개발 법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¹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1997년 11월 3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²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2002년 3월 19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³ 2008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직접투자가 15건, 557만 달러에 이르는데 반해 2011년에는 2건 64,0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직접투자가 위축되었다.

⁴ Brown T. J. & Walters A. S. (2012). *World Mineral Production 2006-10*. Nottingham: British Geological Survey

⁵ U. S. Geological Survey. (2012). 2010 Minerals Yearbook Ukraine[Advance release].

⁶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 국가별투자현황. 참조: <http://www.ikoredis.or.kr/board/article>

⁷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서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공화국 중 발틱 3국을 제외한 12개 공화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II. 우크라이나 자원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환경

1. 우크라이나 자원 및 자원산업 현황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3배에 달하는 603,550km²의 광활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3.8%를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다.⁸ 소비에트연방 당시 우크라이나는 연방의 분업 체제에서 철강, 조선, 항공우주 산업 등의 전략사업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독립 후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취약점이 되기도 하였다. 철강 중심의 우크라이나 경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재투자 부족,⁹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생산 기반의 부재,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¹⁰

(1) 주요 자원 매장량 현황

우크라이나의 주요 생산 광종은 철광석,¹¹ 석탄, 망간, 알루미늄, 티타늄 등이나, 희토류, 니켈, 동, 백운석, 고령토, 흑연, 석영 등의 산업광물도 생산되고 있다.¹² 우크라이나에는 석유¹³ 및 천연가스¹⁴도 부존되어 있으나, 광물 자원에 비교하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자원매장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우크라이나 주요 자원 매장량(2011년말 기준)

종류	확인매장량	단위
석탄	33,873	백만 톤
철광석 ¹⁵	6,000	백만 톤
티타늄	8.4	백만 톤
흑연	6.0	백만 톤
망간	140	백만 톤
석유(원유)	395	백만 배럴(bbl)
천연가스	900,000	백만 m ³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U.S. Geological Survey(2012)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2

⁸ The World Factbook, 2011. Washington, DC: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1.

⁹ 특히 우크라이나 철강금속산업은 반제품 및 저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냉연제품 등 고부가가치제품 생산기반 구축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¹⁰ 우크라이나 국가신용평가 리포트. 2011.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4p.

¹¹ 우크라이나의 철강산업은 생산량 기준으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중 러시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광석 매장량은 세계 1위(철광석 매장량은 300억톤(품위 44~45%) 정도로, 수백 년 채광 가능)이다.

¹² KORE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국별정보(우크라이나). 참조: http://www.kores.net/v2009/mining/mining_country.jsp

¹³ 2011년말 기준으로 석유 확인매장량은 4억 bbl. 이고, 생산량은 81,000 bbl./일이다. (<http://www.eia.gov/countries>)

¹⁴ 2011년말 기준으로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9,000억 m³로서, 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약 0.4% 수준이며, 182억 m³를 생산하였다(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참조: <http://www.bp.com>).

¹⁵ 2011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확인매장량 보고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2010년말 기준 300억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우크라이나의 철광석 매장량은 2011년말 기준 60억톤으로 변경되었다.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2) 자원산업 현황

광업 분야가 우크라이나 **GDP의 21%**를 차지하며 약 **280만명**이 광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¹⁶

(가) 석유 · 가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는 국내 소비를 충당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여 우크라이나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85%** 정도를 CIS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공동투자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자국 내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증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수입대금 미납으로 인한 2차에 걸친 분쟁을 고려하여 가스 수입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최근 액화석유가스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석유 및 가스의 수송 · 저장 산업은 정부기업에 의해 독점 ·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통합가스운송시스템(**United Gas Transportaion System**, 이하 ‘GTS’)은 국영기업인 “**Ukrtransga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정제 등에 대해서는 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외국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기는 하나, 실제로는 국영상장기업인 “**Naftogaz of Ukraine**”(이하 ‘**Naftogaz**’) 및 그 자회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가스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2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너지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에 가입함에 따라 **Naftogaz**의 구조 개편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에너지석탄산업부(**Ministry of the Energy and Coal Industry**)가 석유 및 가스 분야를 관할하는 중앙 국가기관이며, 국가지질지하자원청(**The State Service for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이 자원 개발에 관한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 유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환경천연자원부(**The Ministry of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of Ukraine**)는 자원 개발에 관한 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 광업감독산업안전청(**The State Service on Mining Supervision and Industry Safety**)은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을 통제하며 생산 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전력규제위원회(**The National Electricity Regulation Commission**, 이하 ‘**NERC**’)는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의 영업에 관한 허가서를 발급하고, 석유 및 가스의 공급, 운송, 저장에 관한 관세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우크라이나 법률¹⁷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자연독점을 인정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다. 국영기업이나 국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국가와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Naftogas**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천연가스의 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해서는 **NERC**에 의한 규제관세 및 비규제관세 시스템이 적용된다. 파이프라인 연결은 공급자와 관할 국영회사간에 체결되는 가스 운송에 관한 표준계약에 의해 규제되는데,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가스공급계약 체결 및 **NERC**가 발행하는 공급량증명서 취득이 표준계약 체결의 선행조건이다.

¹⁶ U. S. Geological Survey. (2012). 2010 Minerals Yearbook Ukraine [Advance release].

¹⁷ The Law on Principles of Natural Gas Market Functioning 및 The Law on the Natural Gas Market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한편 Naftogaz가 마련한 GTS 이용 규칙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수송과 관련된 요금은 거주자의 경우 NERC가 정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요금은 개별 계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저장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Ukrtransgaz가 계약당사자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거주자의 저장 시설 사용료는 NERC가 정한 바에 따르고, 비거주자의 저장 시설 사용료는 개별 계약에 의한다.

우크라이나의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러시아가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 주변 유럽 국가에 수송하는데 이용된다. 석유 및 가스 수송의 조건은 Naftogaz와 Gazprom 간의 장기계약에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와 2차에 걸친 천연가스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카스피해 지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나) 철광석

우크라이나의 철강산업은 CIS 국가 가운데 규모와 생산량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철광석 매장량은 약 60억톤으로, 철 함량 기준으로 세계 9위이며, 광석의 품위는 44~4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최대 철광석 지역은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Dnepropetrovsk) 지역의 크리보이로그(Krivoi Rog)¹⁸ 분지로, 크리보이로그의 채광/선광 시설은 우크라이나 철광석, 정광, 펠릿의 80~90% 정도를 공급한다.

2011년말 기준 우크라이나의 철광석 생산량은 8,000만 톤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의 자체 조사 결과로는 54개의 철광석 광산이 있으나,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23개로 파악되고 있다.

(다) 석탄

2011년말 기준 우크라이나의 석탄 생산량은 4,510만톤으로 전년보다 13.0% 증가한 수준이다. 2011년말 기준 우크라이나의 석탄 소비량은 4,240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11.9% 가량 증가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수백 년 동안 생산 가능한 석탄이 부존되어 있어 향후 전력 생산에 있어 석탄이 주요 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석탄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석탄 프로젝트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 석탄 프로젝트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5년까지 석탄 생산량을 6,000만톤 수준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160개의 석탄 광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 140개의 광산은 국·공영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석탄산업부의 직접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생산효율은 국·공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보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망간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에서 최대의 망간이 부존되어 있는 국가로 2011년말 기준 3억 4천만톤을 생산하여 생산량 기준으로도 CIS 국가 중에서는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자체 조사

¹⁸ Krivoi rog 부지는 1985년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시설을 인수받았다. 우크라이나가 56.4%, 루마니아 28%, 슬로바키아가 1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결과로는 5개의 망간광이 보고되어 있으나,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망간광 광산은 2개이다.

2. 우크라이나 자원 분야 투자환경

(I) 우크라이나 자원 분야 외국인 투자정책 현황 및 동향

(가)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의 개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령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법률 및 시행일	주요 내용
투자활동법 (1991년 9월 18일 제정)	우크라이나 내 투자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규정한 법률임.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투자주체의 재산과 권익의 동등한 보호와 우크라이나 국민 경제의 효율적 투자, 국제경제협력증진 및 통합을 명시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법 (1996년 3월 19일 제정)	우크라이나 내 외국인 투자제도의 특성을 규정한 법률임.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외국인의 법적지위법 (1994년 2월 4일 제정)	외국인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 보장됨. 외국인은 우크라이나에서 투자, 대외 경제활동 및 기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음
ICSID 비준법 (2000년 3월 16일 제정)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국가와 타방 국가의 국민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비준을 위한 법률임
과세차별폐지법 (2000년 2월 17일 제정)	우크라이나인 자본으로 설립된 영리활동주체의 과세와 관련된 차별 철폐에 관한 법률임
주식회사법 (2008년 9월 17일 제정)	주식회사의 법적 지위와 설립 절차, 주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임
합작투자기업법 (2001년 3월 15일 제정)	합작투자기업의 설립 절차와 구조,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역할, 자산 운영상의 특성을 규정한 법률임
실시협약법 ¹⁹ (1999년 7월 16일 제정)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양허에 관한 규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임
토지임대법 (1998년 10월 6일)	우크라이나인, 외국인, 외국법인에 의한 농업용 농지 임차 관련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임

(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및 특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외국인 투자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최대 **10**년간 개정 전 외국인 투자법 적용을 보장받을 권리
- 강제 수용으로 인한 손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 천재지변 등의 위급한 상황이 아닌 한 재산을 수용 당하지 않을 권리
- 투자 활동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령하고 투자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배당이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할 권리

¹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유치를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종래에는 '양허'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양허라는 표현은 한국법상으로는 양허관세 외에는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없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어서, 해당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가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concession agreement를 실시협약으로 번역하였다.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 조세 등을 납부한 후 과실을 송금할 권리
- 현물출자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받을 권리(단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

우크라이나는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무역 관련 규제 제도를 완화할 것을 확약하고 WTO에 가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법에서도 내외국인 차별 금지 및 투자자 보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토지 소유 및 농업과 관련하여 다소 외국인에 대한 제한²⁰이 남아있으나 그 외에 자국 산업이나 자원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다른 체제전환국(예컨대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하여 볼 때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외국인 투자법에서 외국인우대조치에 관한 원칙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우대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지방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방정부가 투자자에게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으나, 토지의 제공이나 지방세 감면 등에 있어 특별히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지방정부도 확인된 바 없다.

예컨대 우크라이나는 석탄 및 정유 산업, 섬유 및 의류업, 목재 및 목재 가공업, 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 분야에 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고 하나, 막상 이러한 산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로서 고려할만한 실질적인 특례나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 영업·투자활동의 제한

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영업활동의 제한은 (i) 일반적인 제한과 (ii)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제한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군수사업, 자연독점분야, 바이오-에탄올생산, 화폐나 증권의 인쇄 등의 영업은 오로지 국영기업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영업이 있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영업면허법과 영업허가법, 무역특허법 등이 있다. 예컨대 보안, 금융서비스, 역외금융, 통신 및 미디어, 전력, 원자력, 교육, 지식재산권, 담배 및 주류생산 등을 하기 위하여는 영업활동에 관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광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영업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업면허법에 따른 면허의 신청을 위해 신청인은 신청서, 국가등기부등본, 2001년 7월 4일자 정부령 제756호에서 정한 첨부자료 일체를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에 관한 법정 기간은 10일이나, 관할 국가기관은 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경우나 면허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면허를 부여하는 결정이 있으면 수수료 지급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관할 국가기관이 면허증서를 발급한다. 면허 발급 수수료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영업면허는 기간의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 면허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할 국가기관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면허 소지자가 면허 유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

²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가 불가능하다. 다만 최장 50년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농지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1회의 정기조사가 시행되며, 부정기조사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 조건에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결과 면허 소지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국가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는 조치를 취한다. 면허 없이 영업을 한 법인의 임원은 관할 국가기관에 의해 형사고소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업면허법에 따르면, 면허 소지자가 면허 소멸을 신청하거나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 면허 소지자의 국가등기가 소멸된 경우, 면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국가기관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광업 활동에 따른 작업과 관련하여, 고위험대상에 대한 개발 개시 허가, 고위험기계류와 장비의 사용개시 또는 연장 허가, 고위험작업의 개시 또는 연장 허가, 기계류와 장비의 국가위생역학조사, 기계류와 장비의 허용소음수준 허가 등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영업허가법에 따르면 신청인은 관할 국가기관에 신청서, 국가등기부등본, 법령이 정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에 관한 법정기간은 10일이나, 면허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허가법에서는 1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 국가기관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업허가법에 따르면 허가 보유자가 취소를 신청하거나 허가 보유자의 법인격이 소멸한 때, 허가 취득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다.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상품의 압수, 영업정지, 법인등기의 말소등기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투자협정 체결 현황

(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현재 우크라이나는 68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국가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원천징수세율 15%가 적용되는 배당이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3월(발효일) 우크라이나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취득하는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라 5% 또는 15%, 이자수익과 로열티수익에 대해서는 각 5%가 원천 징수된다. 우크라이나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68개국에는 해외투자 경유지국으로 자주 이용되는 네덜란드(1996년 11월 협정), 싱가포르(2010년 3월 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FTA 등 투자협정

우크라이나는 마케도니아, 터키,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몽골, 불가리아, 러시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등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FTA들은 당사국에게 부과되는 의무면에서 대체로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즉 협정당사국간에 이루어지는 물품 및 용역 거래에 있어서 관세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종류의 부담을 제거하고, FTA에서 정한 목록에 포함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 생산 물품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유사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을 초과하는 어떠한 세금도 부담시키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어떠한 차별적인 수단이나 제한, 방법도 사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FTA에서는 금속산업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몰도바 및 우즈베키스탄과 체결한 FTA에서는 scrap metal(7204 UCC FEA group code 정의)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와 체결한 FTA에서는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속조각의 수출량을 1,500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금속산업에 대한 수출관세법은 특정 합금철 및 고철(7202 and 7204 UCC FEA group code에 정의)의 수출세율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III. 우크라이나 자원 관련 법제

1. 우크라이나 자원 법제의 체계 및 내용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자원(토지, 산림, 수산, 광물 등)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소유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크라이나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한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우크라이나 국민은 천연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선언하고 있다.²¹ 자원의 이용·개발·소유와 관련하여 헌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정신을 구체화 한 것이 1994년 7월 27일 No. 132/94-BP로 제정된 우크라이나 지하자원법(Кодекс о недрах)(이하 '지하자원법')이다. 지하자원법²²은 천연자원의 지질학적 조사, 탐사와 생산에 관한 일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자원법과 별개로 1999년 9월 14일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이하 '생산물분배계약법')이 제정되었는데 생산물분배계약법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산물분배계약법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한 자원 탐사 및/또는 개발 면허의 취득, 이용, 보유에 관한 사항과 생산물 분배 원칙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2001년 7월 12일 석유 및 가스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нефти и газе)(이하 "석유가스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지하자원법이 자원의 이용에 대해 전반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석유가스법은 석유·가스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개발, 이용, 생산, 수송, 저장에 관한 특별규정과 여러 이해당사자의 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위에 언급한 법률 외에도 에너지자원 분야의 주요 법률로는 광업법, 실시협약에 관한 법률, 국가소유 연료에너지복합 시설의 임대 또는 양허 특례에 관한 법률, 우라늄광 생산 및 가공에 관한 법률, 석탄매장지 가스(메탄)에 관한 법률, 천연가스 시장 기본법, 파이프라인 수송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상류부분 자원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본 연구의 검토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²¹ 우크라이나 헌법, 254k/96-BP, 1996년 6월 28일 제정, Відомості Верховної Ради України від 23.07.1996 - 1996 р., №30, статья 141

²² 이 법은 지하자원 외에 지하시설물과 지하공간을 포함한 지하에 있는 모든 물질과 공간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자원법이라고 번역하였다.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2. 지하자원법

(1) 지하자원법의 적용 범위

지하자원법은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지하자원 전반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지하구조물의 설치와 이용을 포함하여 지하구역²³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 관련 기업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 토지자원, 산림자원, 수자원의 이용과 보호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법률이 적용되며, 생산물 분배계약에 에 근거한 지하구역의 이용관계는 생산물분배계약법이, 메탄가스 이용에 관해서는 석탄매장지 가스(메탄)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지하자원법 제3조, 제3-1조).

(2) 관할 국가기관

국가지질지하자원청(이하 ‘국가지질청’)이 지하자원의 조사, 탐사, 생산 등에 관한 면허를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자원부가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여 지하구역을 이용한 자에게 광권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령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필요한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자원을 생산한 자는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불법적으로 채취한 광물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3) 주요 면허와 허가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해서는 지하구역²⁴ 이용을 위한 특별허가(이하 ‘광권면허’)가 필요하다. 지하구역(지하자원과 지하시설물, 지하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지므로 개인이나 법인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서만 지하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구역 사용을 위한 면허는 입찰을 통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또는 국가지질청의 특별 결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광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비용으로 지질조사를 수행하던 중에 경제성 있는 광물을 발견하여 우크라이나 광물매장국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가 이에 해당한다.

광권면허는 영구이용권과 단기이용권으로 구분되는데, 단기이용권은 5-50년을 기한으로 부여된다. 광권면허 기간의 기산일은 광권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광권면허 중 특히 광물과 관련된 권리의 종류 및 그 종류별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지하자원 지질조사: 5년 이하
- 석유가스 지질조사 10년 이하
- 개발생산: 20년 이하,
- 배타적 경제수역의 석유가스 개발생산: 30년 이하
- 지하자원 생산과 관련된 지하시설물의 건설 및 이용: 20년 이하

²³ 지하구역(Недра[Nedra])은 “토양과 지질조사와 개발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지표 및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지각의 일부”로서 우크라이나 영토 지표나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지하자원을 포함한 모든 물질과 지하공간 자체를 의미한다(지하자원법 제1조).

²⁴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에 관한 사용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면허로, 지상에 관한 토지소유권과 구별되며, 해당 지역에서 광업을 수행하는 면허와도 구분된다.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 석유가스 지하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용: 50년 이하

광권면허 보유자는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광업허가는 광권면허를 취득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귀금속이나 특수광물, 준보석 생산과 관련된 광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우크라이나 정부령 제1698호에 따라 광권면허와 별개로 별도의 광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현행 우크라이나 지하자원법은 자원의 중요성에 따라 국가중요광물과 지방중요광물로 구분하고, 국가중요광물의 개발을 위한 광업허가는 국가산업안전위원회가, 지방중요광물의 개발을 위한 광업허가는 지방의회가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다. 광업허가 존속기간은 국가산업안전위원회 및 지방의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광권면허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부여하고 있다.

(4) 조세 및 부담금

우크라이나 영토,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한 지하구역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에 지급하여야 할 조세 및 기타 부담금으로는 지하구역이용료(로열티),²⁵ 면허 발급 수수료, 소비세, 지질탐사기금 지급금 등이 있다(지하자원법 제28조). 다만 토지소유자가 광권면허를 취득한 경우 또는 지질조사나 탐사만을 목적으로 지하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자연보호시설의 설치나 의학적 치료 목적의 광물 생산 등을 위해 지하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하구역이용료(로열티)는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그 액수는 광물이 위치한 지역, 광물의 종류와 특성, 작업수행 기간과 조건, 지질조사 조건,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지하자원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물분배계약법에서 정한 조건과 방식에 따라 로열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지하자원법 제28조). 광물생산의 경우에는 생산 광물의 양, 광산폐기물의 양, 회수된 광물의 양이 이용료 산정 기준이 되나, 생산 중이지 않은 광산의 경우에는 지하구역 면적이 이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석유가스 등의 생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세법에 따라 특별이용료가 부과되는데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석유 또는 가스의 양을 이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하구역이용료(로열티)는 현금은 물론 현물(예컨대 생산한 광물)로 지급될 수도 있다.

(5) 광권면허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광권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광권면허 보유자’)는 광권면허 발급 당시 관할 국가기관과 작성한 면허 계약 조건에 따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구역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지하자원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광권면허 보유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광권면허에 명시된 지하구역 범위 내에서 광권면허 조건 또는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광물매장지 지질조사, 광물매장지 개발 및 기타 작업을 할 권리
- ② 관련 법령이나 광권면허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닌 한 생산된 광물을 처분할 권리
- ③ 광권면허 조건에 따라 광물매장지를 보존·관리할 권리

²⁵ 우크라이나 세법 제263조 제9호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 ④ 광권면허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
- ⑤ 생산물분배계약으로 정한 추가 권리

한편 광권면허 보유자는 지하자원법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① 지하자원을 제공된 목적에 따라 이용할 의무
- ② 지질조사의 완성도 보장, 지하자원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이용 및 보호할 의무
- ③ 인력, 재산 안전 및 자연환경 보전할 의무
- ④ 지하자원 이용 시 훼손된 토지를 향후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할 의무
- ⑤ 우크라이나 법령 및 생산물분배계약으로 정한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기타 요건 이행할 의무

(6) 광권의 소멸

지하자원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광권 소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광권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② 광권 기간이 종료된 경우
- ③ 광권면허 보유자의 사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 ④ 지하자원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방법 및 수단을 이용한 광업활동을 하는 경우
- ⑤ 광권을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고 광권면허에 명시된 기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 ⑥ 광권면허 보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년간(석유가스유망지역 및 석유가스 매장지의 경우 180일) 광권면허에서 정한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⑦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지하구역이 수용된 경우

다만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지하구역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지하자원법 제26조에서 정한 광권 소멸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나, 생산물분배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주민의 건강과 생명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기관은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광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7) 지하자원 보호 원칙과 환경규제

(가) 지하자원 보호의 기본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책임

지하자원 보호 관련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지하자원법 제56조).

- ① 완전하고도 종합적인 지하자원 지질조사
- ② 법률로 정한 광권 부여 절차의 준수 및 임의적인 지하구역 이용 금지
- ③ 광물 및 광물 함유 성분 매장지의 합리적인 이용
- ④ 광물 매장지, 지하 구조물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작업의 금지
- ⑤ 홍수, 화재 및 기타 광물의 품질 및 매장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장지 개발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부터 광물 매장지 보호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 ⑥ 광물이 매장된 지층에 불법 건축 금지 및 그 밖의 목적으로 광물이 매장된 지층을 사용할 경우에 관련 절차 준수
- ⑦ 석유·가스·기타 물질의 지하저장, 유해물질 및 폐기물, 폐수 처리에 있어 지하자원 오염 방지
- ⑧ 자연환경 보호 법령으로 정한 기타 요건 준수

지하자원 보호 관련 규정 및/또는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천연자원부나 그 밖의 관련 국가기관은 광권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광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지하자원법 제57조).

(나) 그 밖의 환경규제

①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광권 면허의 발급과 함께 광업 관련 부지가 지정되며, 광업활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광권면허 보유자는 광업 관련 부지 내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민사 절차에 의해 행해진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환경안전의 저해, 소음, 토질 악화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광권면허 보유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광산폐쇄의 경우 환경복구의무

광권면허 보유자 자가 광구를 폐쇄한 때에는 해당 지역 환경을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를 부담한다.

(8) 분쟁해결

지하구역 이용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국가지질청, 노동보호감독위원회, 환경천연자원부 등), 법원, 중재원 또는 지방의회에서 심리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는 토탄, 지하담수, 지방단위 광물 매장지 개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심사할 권한이 있고, 대부분의 분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심리된다.

(9)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지하자원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행정·민사·형사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하자원법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지하자원법 제65조).

- ① 지하구역 무단 이용
- ② 지질조사 작업 관련 각종 규범, 규칙, 요건의 위반
- ③ 지하자원 매장량에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는 매장지의 선별적인 개발
- ④ 지하자원의 과도한 손실 및 품질의 악화를 초래하는 개발
- ⑤ 향후 이용기회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제한시키는 매장지의 훼손
- ⑥ 광물이 매장된 지층면에 관한 건축 절차 위반
- ⑦ 근로자 안전 및 재산, 천연자원의 보호와 관련된 규칙 및 조건의 불이행
- ⑧ 특별한 과학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질 및 지형 현황 표시, 경계 표시, 지질조사결과물 등의 멸실 또는 손상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 ⑨ 측량 또는 지질 자료의 멸실, 향후 지하자원 지질조사 및 매장지 개발에 필요한 광물 샘플의 멸실
- ⑩ 폐쇄된 광산 및 유정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와 관련된 요건 위반, 보전기간 동안 광산, 유정, 매장지 보호와 관련된 요건 위반

지하자원법에 명시된 행위 외에도 광권면허 보유자는 우크라이나 개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특히 광권면허 유지 조건에서 지하구역의 이용과 관련된 불법 행위 및 그 책임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법률

(1) 생산물분배계약의 목적 및 적용 대상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법률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대륙붕 및 배타적(해양) 경제수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물의 조사,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생산물분배계약법은 생산물분배계약의 체결 요건, 이행의 조건 및 종료에 관한 당사자간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광물의 조사, 탐사 및 생산, 생산물의 분배 및 이와 관련된 수송, 처리, 저장, 가공, 사용, 판매 기타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생산물분배계약법에 규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민법에 따라 규정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2조).

(2) 생산물분배계약의 당사자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당사자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투자자이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5조). 생산물분배계약법상 '투자자'란 ① 지하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재정적, 경제적, 기술적 자격을 갖추었고,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우크라이나인, 외국인, 무국적자, 우크라이나 또는 외국법인, 우크라이나 또는 외국에 설립된 법인들의 컨소시엄, ②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거나 국가가 지분참여를 한 회사, ③ 생산물분배계약상의 지위(권리의무)를 인수한 자를 말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1조).

생산물분배계약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투자자간 양자계약으로 체결 될 수 있고, 또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다수의 투자자간 다자간계약으로 체결 될 수 있다. 다자간계약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된 투자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4조 제2항). 우크라이나 정부는 생산물분배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전담할 정부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3)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의 근거

생산물분배계약은 대륙붕 및 배타적(해양) 경제구역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지하구역을 특정하여 지하구역 단위로 체결될 수 있다. 지하구역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이 정부에게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정부에게 그 이용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가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인 경우 생산물분배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투자자의 이용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6조 제1항).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투자자는 우크라이나 정부 또는 정부상설위원회에 개별 지하구역에 관한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절차의 개시를 제안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3개월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개별 지하구역에 관한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절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시될 수 있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6조 제2항).

- ① 해당 광물매장지 개발로 인해 상당량의 광물자원이 생산될 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 시설의 임시폐쇄 또는 철거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및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정부 및 지하구역 이용자가 개발 지속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신규 대형 광물 매장지의 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광물 생산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정부가 이러한 개발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
- ③ 지질학적 조건이 열악한 곳에 매장되어 있어 광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고비용 특수 기술 도입이 필요하나, 광물의 매장량이 현저하고, 지하구역 내의 연료에너지 및 광물원료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특정 지역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 연료 공급할 필요가 있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향후 탐사될 광물매장지의 효과적인 조사, 탐사, 개발을 위해 신규 기술과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 ⑥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지하구역(해상의 지하구역 및 매장지, 생산의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거나 고갈된 매장지, 석유가스 매장지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⑦ 추가 탐사 또는 정밀 탐사가 필요한 경우

생산물분배계약은 입찰 조건 및 낙찰자가 제시한 조건에 근거하여 체결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6조 제3항). 다만, 일반적인 입찰 절차와는 달리 입찰 참가자가 1인이더라도 해당 입찰 참가자가 입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인의 입찰참가자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6조 제4항). 또한,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을 위해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광물매장량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이 해당 국가기관의 검토 결과 보고서로 확인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광권면허에 근거하여 지하구역 이용을 개시한 자가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한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이 허용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6조 제5항).

(4) 생산물분배계약의 형식 및 내용

생산물분배계약은 입찰조건 및 생산물분배계약법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생산물분배계약에는 투자자 사업목적 및 의무작업계획 일정(작업 일정, 규모, 자금조달의 범위 및 유형, 기술 장비 및 기타 지표 포함), 기타 핵심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8조 제1항). 생산물분배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8조 제2항).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 1) 계약당사자(투자자)의 이름 및 관련 정보
- 2) 지하구역(광물 매장지)에 대한 설명
- 3) 광권 및 지하구역 이용을 위해 필요한 토지 제공 조건
- 4) 광물 자원의 조사, 탐사, 생산 과정에서 토지에 발생한 손실 보상 계획
- 5) 광권의 종류
- 6) 관련 작업 일정, 범위 및 이행기간
- 7)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품질 요건
- 8)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특히 투자자의 토지사용권, 광권, 기타 다른 권리
- 9) 작업 예산 및 계획 협의 절차
- 10) 광물 자원 사용 조건
- 11) 생산된 광물 가격 결정 절차.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 통화 종류 명시
- 12) 광권 이용료 지급 절차
- 13) 측정 지점
- 14) 투자자의 측정 지점으로의 생산물 운송 의무
- 15) 비용회수 생산물의 규모 결정 절차
- 16) 비용회수 생산물로 보상되는 비용의 내역
- 17) 국가와 투자자 간 이익 생산물 분배 절차 및 조건
- 18) 국가에 귀속되는 이익 생산물 이전 절차 및 기간
- 19) 생산물 소유권 이전 절차
- 20) 투자자에 귀속되는 이익 생산물 수령 절차
- 21) 투자자가 국가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 22) 작업 이행 및 기타 생산물분배계약 조건 이행 감독 절차
- 23) 해지 또는 단계별 종료로 인한 계약의 효력 종료 후 광권 관련하여 제공된 지하구역 및 토지 반환 절차와 요건
- 24) 계약의 개정, 해지 또는 연장 조건
- 25) 계약에 규정된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이전 조건
- 26) 계약에 규정된 지하자원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이용,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요건
- 27) 광산시설의 임시 폐쇄 또는 철거 절차
- 28) 계약존속기간, 계약 서명일, 장소, 효력발생 절차
- 29) 계약당사자 책임과 이행 담보 수단
- 30) 분쟁 해결 절차
- 31) 투자자가 생산물분배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창출하거나 취득한 재산 및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이전하는 절차
- 32) 생산물분배계약법에 명시된 기타 핵심 조건

이외에도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투자자는 가격, 수행 기한, 품질에 차이가 없고, 국제표준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산 제품 및 상품, 용역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무 우크라이나인 근로자의 우선 고용 의무를 부담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8조 제5항).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한편 외국인이 생산물분배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에 대표사무소를 등록할 의무를 부담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9조).

(5) 생산물분배계약의 추가조건

탄화수소 원료의 조사, 탐사, 생산에 관하여 체결된 생산물분배계약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광물매장지 사용에 관하여 체결된 생산물분배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생산된 광물 특성과 관련된 연간신고
- ② 지질학 정보, 지구물리학 정보, 기타 정보 이용 절차
- ③ 산업 및 기술 수요 비용 산정 절차 및 특례
- ④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시점 기준 지하구역 주변 환경오염도 평가 절차 및 기간
- ⑤ 자연보호 조치 이행 범위, 금액, 기간
- ⑥ 작업계획 협의 및 승인 절차
- ⑦ 국가로 생산물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생산된 광물의 국가 지분 책임 보관 조건
- ⑧ 재산위험보험 조건
- ⑨ 매장지개발에 관한 예외적인 위험 조건

(6) 생산물분배계약의 작성 및 승인

생산물분배계약 초안은 투자자가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 결의로 정부상설위원회가 생산물분배계약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10조).

생산물분배계약 초안은 입찰 결과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준비되어야 하며, 정부상설위원회 실무기관이 이를 등록한다. 생산물분배계약 초안은 반드시 재무, 법률, 환경, 기타 사항에 대한 정부실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상설위원회는 생산물분배계약 초안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투자자에게 실사결과를 전달하거나 생산물분배계약 수정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는 생산물분배계약 초안을 수정하거나 생산물분배계약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이후 당사자들은 생산물분배계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된 생산물분배계약 최종안을 정부상설위원회에 등록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11조). 외국인 투자자가 생산물분배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우크라이나어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되며, 우크라이나어본과 영문본 계약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어본과 영문본간 조항의 충돌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분배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어본이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13조 제3항).

(7) 생산물분배계약의 존속기간

생산물분배계약의 기간은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광물의 조사, 탐사, 생산에 할당된 기간 및 이러한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와 조건은 생산물분배계약 계약기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투자자가 생산물분배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계약 이행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크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라이나 정부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14조 제1항). 투자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의무불이행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협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생산물분배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된 면허나 기타 인허가의 존속기간도 생산물분배계약 기간 연장에 관한 추가약정 체결과 동시에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생산물분배계약의 이행

생산물분배계약에서 정한 작업계획 일정에 따라 조사 및 탐사 작업 관련 개별 단계가 완료되면 투자자는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이전 받아 사용하였던 지하구역을 반환하여야 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16조).

(9) 생산물분배계약 조건에 따른 광권의 내용

생산물분배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지하구역을 이용할 권리(이하 '광권')가 계약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부여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결의에 의해서만 중지, 제한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17조 제1항).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거나 환경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는 광권의 정지나 제한을 결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협 원인이 제거되는 시점부터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광권은 즉시 회복된다. 생산물분배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된 광산시설의 폐쇄나 철거는 투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17조 제3항).

(10) 생산물 분배 절차 및 내용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우크라이나 정부와 투자자)은 해당 지하구역에서 생산된 광물을 분배하여야 한다. 생산물분배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분기별로 생산물을 분배한다. 분기별 비용회수 생산물의 비율은 정산기간 내 총 생산량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생산물분배계약의 어느 당사자도 생산물 분배 전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투자자에게 비용회수 생산물로 보상되는 비용 내역의 결정 절차는 생산물분배계약으로 정하나, 이 경우 다음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19조).

- ① 생산물분배계약으로 정한 작업 이행과 관련된 투자자의 비용만 보상
- ② 비용회수 생산물로 보상되는 비용 내역은 우크라이나 세법에 따른 법인세 산정에 관한 비용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
- ③ 생산물분배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초 정산기간 이전에 비용 보상 개시
- ④ 측정지점에서 비용회수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비용 보상
- ⑤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시 투자자가 지출한 비용은 비용회수 생산물로 보상
- ⑥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보상되는 비용 내역은 문서로 승인
- ⑦ 장기 생산물분배계약(10년 초과)의 경우 비용회수 생산물로 보상되는 비용을 물가와 연동
- ⑧ 비유동자산 매입비용, 탐사, 설비공사 및 광물 생산 작업비용은 비용 지출 시점에 전부 비용내역에 포함

(11) 생산물 소유권

생산물 측정지점에서 생산물을 분배하기 전까지 모든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유한다. 생산물 측정지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받음으로써 투자자는 비용회수 생산물 및 이익회수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투자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생산물은 우크라이나 정부 소유로 귀속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20조). 한편,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후 투자자는 제한 없이 해당 생산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생산물분배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판매지역이나 판매가격, 판매상대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다만, 입찰 조건에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판매나 판매상대방 제한의 조건이 포함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판매가격은 해당 생산물의 국제 시장가격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22조).

투자자가 생산물분배계약의 이행을 위해 창출하거나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귀속한다. 이와 같은 재산의 소유권은 해당 재산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 비용회수 생산물로 보상 완료되는 날 또는 생산물분배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투자자에게서 우크라이나 정부로 이전되며,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투자자는 생산물분배계약 존속기간 동안 이전 재산에 대한 사용 우선권을 보유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23조).

(12)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수도

투자자는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생산물분배계약 계약에 명시된 작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자원과 경험을 갖춘 다른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권리·의무 양수도 신청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의 동의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26조).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수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서면계약 체결에 의하며, 이러한 양수도계약은 생산물분배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등록 대상이 된다. 양수도계약이 체결·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관련 면허 및 인허가 등이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급되어야 한다. 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종전 생산물분배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우크라이나 투자자가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생산물분배계약에 명시된 기간과 조건 변경이 협의될 수 있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26조).

(13) 법률 변경에 대한 보장

우크라이나 정부는 생산물분배계약에 명시된 투자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생산물분배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시행 중이던 법률 규정이 계약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관련 세금 또는 수수료가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광물 조사, 탐사, 생산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내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용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보장 규정은 국방,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27조).

(14) 생산물분배계약 이행 감독

우크라이나 정부는 생산물분배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최소 매 5년마다 정부상설위원회와 함께 생산물분배계약에 규정된 조건들의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한다. 만일 투자자의 중대한 계약상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원에 생산물분배계약 해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산물분배계약의 이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적법한 대리인은 생산물분배계약상 명시된 작업 장소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작업과 관련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28조).

(15) 생산물분배계약 당사자의 책임

생산물분배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투자자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 벌금과는 별도로 투자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투자자는 오직 해당 손해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 사유 또는 피해자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28조).

(16) 분쟁해결 및 우크라이나 정부의 면책

당사자간의 생산물분배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종료, 무효 등에 대한 분쟁은 생산물분배계약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31조).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생산물분배계약에 대한 면책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면책포기는 모든 법원 판결,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 가처분 결정, 법원 및 국제상사중재원 판정의 집행에 대해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생산물분배계약법 제32조).

4. 석유 및 가스에 관한 법률

석유 및 가스에 관한 법률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석유가스사업 활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적·경제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지하자원법과 달리 석유가스법은 석유·가스 부분으로 내용을 한정하여 지질조사, 탐사, 개발, 생산, 수송, 보관, 사용, 가공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석유가스법 전문). 석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석유가스법 외에 지하자원법, 파이프라인 수송에 관한 법률,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법률 등도 적용된다.

(1) 석유가스의 소유

우크라이나 영토, 영해,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 위치한 석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귀속된다. 다만, 석유 및 가스 지하구역을 이용할 권리(이하 ‘석유가스개발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면허에 근거하여 생산한 석유가스는 석유가스개발면허권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석유가스개발면허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해당 면허권자가 석유가스개발면허에 따른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사업수행을 위해 제작·설치한 건축물, 장비 및 기타 자산의 소유권은 해당 면허권자에게 귀속된다(석유가스법 제10조).

(2) 석유가스개발면허의 종류

석유·가스 지하구역 이용, 석유·가스 매장지 조사 및 탐사, 석유·가스 보관 지하저장소 설치 및 운용은 석유가스개발면허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다(석유가스법 제11조). 석유가스개발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매장지 상업개발을 포함한 석유·가스 지하구역 지질조사 면허
- 매장지 상업개발, 향후 석유·가스 생산을 포함한 석유·가스 지하구역 지질조사 면허
- 석유·가스 생산 면허
- 광물 생산과 관련 없는 지하건축물 건설 및 운용, 석유·가스 저장저장소 면허

그 중 석유·가스 생산 면허를 보유한 자는 해당 지하구역 범위 내에서 석유·가스 신규 광상 조사 및 탐사를 할 수 있다(석유가스법 제13조).

(3) 석유가스개발면허 부여 방법 및 제한

석유가스개발면허는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자에게 발급된다. 석유가스개발면허 보유자는 면허에 따른 각종 권리를 증여, 매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현물로 출자하는 것도 금지된다(석유가스법 제14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발급된 석유가스개발면허는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다(석유가스법 제25조).

(4) 석유가스개발면허 존속기간

석유가스개발면허 보유자는 면허의 효력이 개시된 날(면허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면허에 특정한 석유·가스 지하구역에서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석유가스법 제17조).

법률이 정하는 석유가스개발면허의 각 종류별 최대기간은 다음과 같다.

- 육상 매장지 상업개발을 포함한 석유가스 지하구역 지질조사 - 5년 이하
-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매장지 상업개발을 포함한 석유가스 지하구역 지질조사 - 10년
- 육상 석유가스 생산 - 20년 이하
-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석유가스 생산 - 30년 이하
- 석유가스 지하저장소 건설 및 운용 - 50년 이하

(5) 석유가스개발면허 보유자의 권리의무

석유가스개발면허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한다.

- 석유가스개발면허에 명시된 사업목적에 위해 제공된 석유·가스 지하구역 이용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 석유·가스 개발에 필요한 개별 작업 수행을 위해 하수급인 선정
- 석유·가스 지하구역에서의 사업 수행 및 종료

석유가스개발면허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지질조사의 완성도 보장, 지하자원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이용 및 보호
- 석유·가스 지하구역 이용 관련 우크라이나 법령, 현행 기준, 규칙, 규범 요건 준수
- 석유·가스 지하구역 이용 관련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
-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및 환경에 끼친 손해 배상

그 밖에 석유가스개발면허 보유자가 부담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석유·가스 지하구역이용조건에 관한 계약(이하 '석유가스계약')으로 정한다(석유가스법 제20조).

(6) 석유가스개발면허 정지 및 취소

석유가스개발면허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지될 수 있다.

- 석유가스개발면허 보유자 또는 그의 하수급인이 해당 석유가스계약 또는 면허유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석유·가스 지하구역 사용과 관련한 작업 수행 결과 석유가스개발면허 보유자의 근로자 또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 환경보호 및 석유·가스 지하구역의 합리적 이용과 관련된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 지하구역 내 석유·가스 신규 매장지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석유가스개발면허에 근거하지 않은 작업 수행

다만, 이러한 정지사유의 원인이 해소되고, 면허보유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때에는 석유가스개발면허의 효력은 즉시 회복된다(석유가스법 제26조).

한편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석유가스개발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 석유가스개발면허 보유자가 면허를 포기한 경우
- 석유가스개발면허 사업주체가 청산된 경우
- 사용을 위해 제공된 석유·가스 지하구역이 수용된 경우
- 교부된 석유가스개발면허가 법원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인된 경우
- 석유가스개발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이러한 정지 원인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석유가스개발면허 보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면허 효력 발생일로부터 180일 동안 석유·가스 지하구역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면허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석유·가스 지하구역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석유가스개발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석유가스계약도 당연 해지된다.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7) 석유가스계약의 내용

석유가스계약은 석유가스개발면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석유·가스 지하구역의 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 석유가스개발면허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기관과 해당 계약을 체결한다.

(8) 석유가스법 위반 책임

석유가스법을 위반한 자는 행정, 민사,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 위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석유가스법 제51조).

- 석유·가스, 관련 가공제품 절도(파이프라인으로부터의 절도도 포함)
- 석유·가스, 관련 가공제품 측정장치의 파손
- 석유·가스 시설의 분해 및 손괴, 횡령
- 석유·가스 시설의 이용 및 관련 업무 방해
-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위협 조성 및 관련 안전규범 위반
- 석유·가스 시설 보호 규칙 위반
- 관련 시설 운용인력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강압적인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 대한 가스 공급 의무 불이행
- 국가지질자원정보에 석유·가스 지하구역에 관한 정보 제공 거부
- 국가감독기관의 고시, 의견,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그 대리인의 직무 수행 방해

IV. 결론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해외 투자자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아직까지 자원개발측면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우크라이나 국내 투자환경이나 법제의 투명성 부족, 행정관료주의 등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위치이다. 따라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주요 자원개발 대상국가가 될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동유럽 국가의 자원개발 법제 및 실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루마니아 자원개발 법제 개요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1. 서론

루마니아의 면적은 238,291km²로 한반도의 2.3배에 불과하지만 루마니아는 영토 규모에 비해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주요 자원은 석탄, 철광석, 구리, 크롬, 우라늄, 보크사이트, 금, 납, 마그네사이트 등이다. 루마니아는 20세기 중반까지는 유럽 2위의 산유국이었으나,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여 현재는 국내 석유 수요의 30~40%,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50~60%만 자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자원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광물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금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자원매장량이 전통적인 자원부국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일부 자원, 예를 들어, 보크사이트의 경우에는 매장량 5천만톤으로 전세계 19위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매장량을 보유한 다른 자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루마니아는 2007년 1월 1일 27번째 회원국으로 유럽연합(이하 "EU")에 가입하였다. 루마니아 정부는 EU 가입을 준비하면서 EU의 요구에 따라 루마니아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고 에너지·자원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 및 가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상당수의 국영 석유·가스 기업을 민영화하였다. 루마니아 정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집중적으로 국영 석유·가스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Petrom, Distrigaz Nord, Distrigaz Sud**이 민영화되어 외국기업이 지배주주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IMF가 루마니아에 에너지 국영기업 매각을 권유함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2011년 9월 국영 광업기업에 대한 추가 민영화 일정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국영 광업기업에 대한 입찰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발전사업 프로젝트 일부가 추진되던 중 중단된 것들을 제외하고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루마니아의 자원개발 관련 법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이 루마니아에 자원개발 투자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루마니아의 자원개발 법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루마니아 자원산업 현황

가. 외국인투자 현황

(1)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현황

루마니아는 시장 규모 면에서 EU 27개국 중 9위이며, 인구수로는 EU 7위로서, 유럽 지역에서는 상당한 투자 잠재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1989년 개방 직후에는 수출기지 육성의 관점에서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루마니아 내수 시장을 고려하여 소비재나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1년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자유무역 및 공정경쟁 원칙을 천명한 루마니아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외국인투자법, 상법, 회사법, 중소기업법, 외환규제법, 산업공단법 등 체제전환에 필요한 일련의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외국인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정부가 예외적으로 정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외국인도 자유로이 루마니아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민간투자사업법(PPP)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공공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료주의의 폐해가 심각하며 부패수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 외국인 투자 동향

루마니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말 기준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약 65% 감소한 4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한 35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루마니아 정부의 경상수지 적자의 50% 수준이다. 유럽의 경제 불안과 이에 따른 루마니아 정부의 규제 정책 선회로 인하여 2011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더욱 감소하여 전년 대비 약 37% 감소한 22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루마니아 정부 경상수지 적자의 30%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도	FDI 유입액(억 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2008	139	--
2009	48	-65
2010	35	-25
2011	22	-37

출처: 루마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나. 루마니아 자원 및 자원산업 현황

(1) 주요 자원 매장량 현황

종류	매장량	단위	세계순위
보크사이트	50	백만톤	19
흑연	200	천 톤	14
석탄	291	백만 톤	-
무연탄	280	만 톤	
우라늄	6,700	톤U	-
석유(원유)	600	백만 배럴(bbl)	47
천연가스	100,000	백만 m ³	63

출처: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http://www.kores.net/naInfo/>);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2

(2) 루마니아 자원 산업 구조

가) 광업

최근 루마니아 광업 동향은 광물 개발·생산보다는 광물을 수입·가공하여 2차 제품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을 기준으로 루마니아 전체 노동자 약 1천만 명 중 7만 3천여 명(0.73%)이 광업에 종사하고 있다.¹ 루마니아는 EU 가입을 위해 EU의 환경 및 산업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광업시설을 폐지하거나 광물 생산을 중단하였고, 광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예컨대 루마니아 정부는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아탄과 갈탄광산을 비롯하여 경제성이 낮은 일부 광산을 폐광조치하였으며, 광미담 및 폐기물의 위험성 조사 분석 사업을 추진하였다.² 그러나 한편 EU 가입과 함께 추진된 광업 관련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은 구리·철광석·납·아연 등과 같은 광물 개발 및 생산 중단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다.

(1) 알루미늄·알루미늄

2010년 기준 루마니아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45만톤이며, 알루미늄은 약 25만톤 수준이다. 네덜란드 회사인 Vimetco N.V. 계열 Alum S.A. 소유 공장은 툴세아(Tulcea)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회사인 En+ Group 계열 중부유럽알루미늄회사가 소유한 Cemtrade 공장은 오라데아(Oradea)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 시설현대화를 위해 폐쇄되었던 Alum S.A. 소유 공장은 2009년말 생산을 재개하여 2010년 한해 동안 약 45만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2006년 알루미늄 생산 작업을 중단한 중부유럽알루미늄회사의 Oradea 공장은 2012년 현재까지 폐쇄된 상황으로, 현재 En+ Group 으로부터

¹ 2006년을 기준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전체 자원 산업 고용인구는 직물, 기계 산업에 이어 제3위로 전체 노동력의 6%정도이다.

² 나아가 개별회사 기준에서 영국기업 Wardell Armstrong는 루마니아 광업 부문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폐광 프로그램 및 환경의무 검토를 위해 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Wardell Armstrong의 지원으로 루마니아 국영기업 CNH Petrosani의 주 계곡(Jiu Valley) 소재 Lupeni 광산이 환경행동계획 모델로 개발되었으며 Wardell Armstrong는 다뉴브강 유역 보호 및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준수의 일환으로써 오스트리아 GeoConsult와 공동으로 루마니아 티사강 유역(Tisza Basin)의 오염도 측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계열분리 절차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생산금속	지배주주/운영회사	주요설비 위치	연간생산가능량(천t)
알루미늄	Cemtrade	오라데아(Oradea)	250
	Alum S.A.	툴세아(Tulcea)	600
알루미늄	Alro S.A.	슬라티나(Slatina)	265
	Neferal S.A.	부쿠레슈티(Bucharest)	N/A

출처: U.S. Geological Survey. (2012). 2010 Minerals Yearbook Romania [Advanced release]

(2) 금 · 은

2004년 루마니아 정부는 금, 은, 다금속광물과 관련한 약 28개의 탐사/개발면허를 발급하였고, 그 중 하나가 유럽에서 미개발금광으로는 최대규모라고 지칭되는 러시아 몬타나(Rosia Montana) 프로젝트이다.⁴ 러시아 몬타나는 루마니아 북서부 폐광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캐나다 상장회사인 가브리엘 리소시스(Gabriel Resources Ltd.)가 위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러시아 몬타나 골드 코퍼레이션의 지분 80.69%를 보유하고 있다.⁵ 루마니아 환경부가 위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술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적합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2007년 9월 프로젝트의 시행이 중단되었으나, 2010년 12월 루마니아 법원이 개발면허의 적법·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가브리엘 리소시스는 루마니아 정부와 개발 조건 및 환경 복구에 관한 협상을 계속 중이며 러시아 몬타나 금광이 루마니아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가브리엘 리소시스에 의하면 러시아 몬타나 금광의 확인매장량은 금 184톤, 은 1,014톤으로, 2015년 상업생산이 개시되면 16년간 연 15.89톤의 금이 생산 가능하여 루마니아 경제에 약 190억불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⁶

(3) 납 · 아연

루마니아의 최대 규모 납·아연 생산회사인 Sometra S.A.는 그리스 회사인 Mytilineos Holdings S.A.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납·아연 농축물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9년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2012년 현재까지 공장이 폐쇄된 상태이다.⁷

항목	지배주주/운영회사	주요설비 위치	연간생산가능량(천t)
납:			
광석	국영 Remin S.A.	바이아 마레 광산(Baia Mare)	12
	국영 Minvest S.A.	베텔(Vetel)	5
금속	Sometra S.A.	콕샤 미카(Copsa Mica)	18
	Neferal S.A.	부쿠레슈티(Bucharest)	25
아연:			

³ 중부유럽알루미늄회사 홈페이지 참조: <http://www.ceacgroup.com>

⁴ Gold mining in Romania – overview(<http://www.mbendi.com/indy/ming/gold/eu/ro>)

⁵ Gabriel Resources Ltd. 공식홈페이지 참조(<http://www.gabrielresources.com/site/corporate.aspx>)

⁶ U.S. Geological Survey. (2012). 2010 Minerals Yearbook Romania [Advanced release]

⁷ Mytilineos Holdings S.A. 홈페이지 참조(<http://www.mytilineos.gr/site/el-GR/home/index.aspx>)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광석	국영 Minvest S.A.	바이아 마레 (Baia Mare)	12
	국영 Remin S.A.	베텔(Vetel)	45
금속	Sometra S.A.	콥샤 미카(Copsa Mica)	62

출처: U.S. Geological Survey. (2012). 2010 Minerals Yearbook Romania [Advanced release]

나) 천연가스 산업

루마니아는 중부유럽 최대의 천연가스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서유럽으로부터 연간 소비량의 약 25%를 수입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1990년대 초반에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 개편을 개시하여, 1997년부터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민간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2000년에는 국영가스기업인 **Romgaz S.A.**⁸를 아래와 같이 5개 회사로 분할하였다.⁹ 2001년 **Exprogaz S.A.**와 **Depogaz S.A.**가 합병하여 현재의 **SNGN RomGaz SA**에 이르게 되었다.

회사명	거점 도시	사업 내용
Distrigaz Sud S.A.	부쿠레슈티(Bucharest)	공급 및 유통
Distrigaz Nord S.A.	티르구무레시(Targu-Mures)	공급 및 유통
Exprogaz S.A.	메디아스(Medias)	생산 및 저장
Depogaz S.A.	플로이에슈티(Ploiesti)	저장
Transgaz S.A.	메디아스(Medias)	운송 및 교통

2001년 루마니아 천연가스 시장의 개방 규모는 10%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 25%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2007년에 이르러 천연가스 시장은 100% 개방되었다.¹⁰

구 가스법에 따르면 루마니아 천연가스 시장의 참가자는 천연가스 생산회사, 천연가스 공급회사, 천연가스 운송회사/국영운송회사, 천연가스 배급회사, 천연가스 저장 및 보관회사, 사용자(최종소비자)로 구분된다. 사용자를 제외한 천연가스 시장의 참가자는 각 사업목적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양허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편, 2012년 7월 새로 제정된 신 에너지 가스법(**the New Energy and Gas Law No. 123/2012**)에 따라 루마니아 국내 천연가스 시장에 적용되던 가격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¹¹

다) 석유 산업

루마니아 및 흑해 루마니아 대륙붕에 존재하는 모든 석유는 공공의 재산으로 루마니아 정부에 귀속된다. 루마니아인(개인 및 법인 포함) 또는 외국인(개인 및 법인 포함)은 루마니아 규제당국에서 허가한 조건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만 석유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루마니아 석유 시장은 완전 개방되어 있으며, 석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및

⁸ 루마니아 정부가 약 8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Romgaz S.A.**는 루마니아 천연가스 소비량의 4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⁹ **SNGN Romgaz S.A.** 홈페이지 참조: <http://www.romgaz.ro>

¹⁰ 루마니아 천연가스 시장의 주요기업으로는 **Interagro SA, Romgaz SA, OMV Petrom Gas SRL, GDF Suez Distributie Gaze SRL** 등이 있다.

¹¹ 비가정용 고객(**Non-household Customers**)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정용 고객(**Household Customers**)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 단계별로 가격규제가 폐지될 계획이다.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는 누구라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OMV Petrom S.A.**¹² 이 루마니아 석유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영석유기업이었던 **SNP Petrom S.A.**가 루마니아 영토 및 영해, 대륙붕에 부존하는 모든 석유의 개발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민영화된 것에 기인한다. 최근에 이르러 외국계 석유회사들이 직접 개발면허를 취득하거나 석유개발계약(**Petroleum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루마니아 석유시장에 대한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루마니아 자원 관련 법제

가. 루마니아 자원 법제의 체계 및 내용

자유시장경제 구조를 천명하고 있는 루마니아 헌법 제135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천연자원의 개발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6조는 루마니아 영토의 광물,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천연자원은 배타적인 공공재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소유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루마니아에서 석유 및 가스, 광물을 조사, 탐사, 개발, 생산하거나 이를 처분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국가와 권한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광물에 대해서는 광업법, 석유 및 가스에 대해서는 석유법과 신에너지가스법이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광업법(**No. 85/2003**)은 광물 매장지 조사, 탐사, 개발, 생산, 처리, 처분 절차뿐 아니라 환경보호 및 폐광에 따른 사후 조치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광물의 개발에 관한 기본법률의 역할을 한다. 루마니아 광업법은 공정경쟁원칙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Licenses**) 또는 허가(**Permit**) 발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의 종류, 자금의 출처, 사업자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석유 및 가스의 상류부문에 대해서는 석유법(**No. 238/2004**)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 가스법은 천연가스 생산에 관한 면허보유자의 요건,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석유법과 중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 석유법은 석유가스사업의 주요 형태, 석유계약의 종류, 석유계약에 따른 주요 권리의무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한편, 루마니아 정부령(**No. 2075/2004**)은 석유가스사업과 관련된 양허계약 체결 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2년 7월 16일 신 에너지 가스법(**No. 123/2012**)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루마니아 가스 시장을 규율하던 기본적인 법률은 가스법(**No. 351/2004**)이었다. 그러나 신 에너지 가스법이 제정되면서 이전 가스법과 전력법(**Electricity Law No. 13/2007**)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신 에너지 가스법은 EC 지침을 국내법으로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루마니아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구조 변경하는데 주된 입법목적이 있다. 신 에너지 가스법은 1부에서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고, 2부에서 가스시장에 대한 규제사항을 명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신 에너지 가스법의 시행에 따라 관할당국인 에너지규제청이 하위규정들을 정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전력시장의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개

¹² **OMV Petrom S.A.**는 루마니아의 석유회사로 루마니아 최대규모의 기업이며, 동유럽에서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생산회사이다. 루마니아 국영석유회사인 **SNP Petrom S.A.**가 2004년 민영화될 당시 오스트리아 석유회사인 **OMV**가 51%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2010년 회사명을 **OMV Petrom**으로 변경하였다.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월 이내에, 가스시장의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하위규정들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신 에너지 가스법에 따른 하위규정의 제·개정이 완료되기까지는 구 가스법에 따른 기존 하위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 면허에 관한 정부령(No. 784/2000)은 천연가스 관련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Authorisations) 및 면허(Licenses) 취득 요건과 발급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루마니아 에너지 규제청 명령(No. 1271/2004, No. 1165/2004, No. 1362/2006)은 천연가스 배급면허, 천연가스 공급면허, 천연가스 수송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루마니아 정부령(No. 824/2004)은 천연가스 저장 및 보관허가 취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루마니아에서는 에너지 분야를 규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법(No. 220/2008), 원자력법(No. 111/1996)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들은 자원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본 연구의 검토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나. 광업법(Mining Law No. 85/2003)

1) 광물 자원의 개념과 그 소유

광업법은 공공재산인 광물자원의 자본화를 촉진하고 루마니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업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권리의 종류, 자본의 출처, 사업자의 국적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투자 회수 및 이익과 관련된 제한을 완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광업법 전문).

국제법 원칙과 국제규범에 따라 경계가 획정되어 있는 루마니아의 영토, 루마니아의 지하구역(Subsoil), 루마니아에 귀속된 흑해 내 대륙붕에 위치한 광물자원은 배타적으로 공공의 재산에 속하며, 루마니아 정부에 귀속된다(광업법 제1조).

광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광물자원은 석탄, 철광석 및 비철광석, 알루미늄 광석 및 광물, 귀금속, 희유 금속, 방사성 금속, 희귀금속, 소금, 비금속 유용광물, 유용암석, 보석 또는 준보석, 토탄, 진흙과 치료용 토탄, 역청탄, 비가연성 가스, 지열수, 지열수와 관련된 가스, 천연광천수(가스성과 비가스성), 치료용 광천수 등이다(광업법 제2조).

광업법상 광업활동이란 조사, 탐사, 개발, 생산, 가공, 농축, 생산물의 상품화, 광산의 관리 및 유지·보수·폐쇄, 환경복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광업법 제3조).

광업법에 따른 광업활동의 주체는 법인 및 자연인이다(광업법 제4조). 루마니아 광업법은 명시적으로 외국법인도 광업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당연히 외국법인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광업활동을 위한 토지 사용권 및 접근권

광물의 탐사·생산을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매매, 교환, 임차, 수용, 토지사용승인(Concession) 등의 방법으로 취득될 수 있다(광업법 제6조). 광업권자는 생산 또는 탐사 지역에 접근하거나 기타 필요한 광업활동을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역권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의 행사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간 사용료 지급이 지역권 행사의 요건이 된다. 만약 광업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한 후 60일 이내 사용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광권으로 보장되는 광업활동의 기간과 동일하며, 지역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광업법 제7조).

3) 광권의 종류 및 존속기간

가) 조사단계

조사활동은 관할당국이 발행한 비배타적 허가(Permit)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허가지역의 경계와 면적은 관할당국이 정한다. 조사활동 허가에 대해서는 갱신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조사활동 수수료를 연간 선납하는 조건으로 최대 3년 기한의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조사활동 허가를 취득한 자는 사전에 제출한 연간 프로그램에 따라 조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활동에 대한 분기 및 연간 보고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탐사단계

루마니아 또는 외국법인은 관할당국이 승인한 특정지역 내 광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면허(License)에 근거하여 탐사활동을 할 수 있다. 탐사면허는 공개입찰(Public Offering)에 따른 낙찰자에게 발급된다(광업법 제15조). 탐사면허의 최대기간은 5년으로, 면허권자는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면허권자는 매년 선납으로 탐사활동수수료를 납부하고, 환경복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경복구를 위한 재무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탐사계획에서 정한 탐사활동은 탐사면허에서 정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탐사면허의 축소는 면허권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관할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필요한 환경복구작업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광업법 제16조).

다) 생산단계

생산면허(License)는 배타적 면허로서 (1) 탐사 최종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탐사면허권자가 발견된 광물에 대하여 생산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탐사면허권자에게 발급되거나 (2)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결정된 낙찰자에게 발급될 수 있다(광업법 제18조). 생산면허권자에게 교부되는 생산면허의 최대기간은 20년이며,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면허권자는 5년 단위로 기간연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생산면허권자는 광업법에 따라 매년 생산활동수수료를 납부하고 로열티(Mining Royalty)를 지급해야 한다(광업법 제20조).

[단계별 면허 또는 허가의 종류]

	조사단계	탐사단계	생산단계
배타성	비배타적	배타적	배타적
교부방법	루마니아 법인 및 외국 법인 신청	공개입찰	탐사면허권자 우선권 보장 또는 공개입찰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면허/허가기간	3년(연장 불가)	5년(3년 연장 가능)	20년(5년씩 연장 가능)
수수료/조세	조사활동 수수료(연간 선납)	탐사활동 수수료 (연간 선납) 및 환경복구 재무보증서	생산활동 수수료 (연간) 및 로열티(연간)

모든 면허(License)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탐사면허는 관할당국 대표의 명령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생산면허는 정부의 면허 승인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면허 발급일에 시행 중인 법률의 규정은 면허가 유효하게 존속되는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광업법 제21조). 한편, 생산면허를 취득한 외국법인은 생산면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루마니아에 지점을 개설하여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광업법 제23조).

4) 면허 양도

면허권자는 관할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면허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관할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면허의 양수도는 무효이다. 한편, 면허권자의 법적 조직형태가 변경되거나, 매각되거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면허권자의 법적 승계인에게 이전되며, 이 경우 관할당국과 승계인은 면허 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광업법 제24조).

5) 광권(Mining Concession)의 소멸

광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권의 소멸 사유는 아래와 같다(광업법 제31조).

- ① 면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면허권자가 면허를 포기한 경우
- ③ 관할당국이 면허/허가를 취소한 경우
- ④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면허권자가 면허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면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 ⑤ 생산면허의 경우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매장량이 고갈된 경우

6) 면허/허가의 정지 및 취소

관할당국은 면허/허가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면허/허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지가 고지된 때로부터 정지 원인이 치유될 때까지 최대 1년간 해당 면허/허가는 정지된다(광업법 제33조).

- ① 광업활동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② 도산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③ 환경협약 또는 근로자의 산업안전 승인이 정지된 경우
- ④ 광업활동 수행 방식이 미래의 자원개발에 위협이 되거나 매장지 보호 및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⑤ 건강 및 안전 보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음이 관련 관할당국에 의해 인정된 경우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한편, 관할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허/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광업법 제34조).

- ① 광업활동 승인 및 개시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관할당국의 동의 없이 60 일 이상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 ③ 관할당국의 동의 없이 개발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 ④ 탐사작업의 경우 연간 탐사계획 생산작업의 경우 연간 업무계획을 위반하여 광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⑤ 환경 보호 또는 근로자 안전 승인이 취소된 경우
- ⑥ 고의로 관할당국에 광업활동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면허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⑦ 루마니아 정부에 납부해야 할 조세 및 수수료 등을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
- ⑧ 면허/허가의 정지와 관련하여 정지 원인이 치유조건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방식으로 부여된 광권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결정은 루마니아 공식 관보에 공고되어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실은 관할당국이 관리하는 광업장부에도 기재된다. 한편, 광권이 취소된 때에는 광권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된 모든 기술 설비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루마니아 정부에게 귀속된다(광업법 제37조).

7) 면허/허가권자의 권리와 의무

면허/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광업법 제38조).

- (1) 면허/허가에 따라 광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나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2) 면허/허가에 따른 지역 내에서 모든 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 (3) 생산된 광물을 처분할 권리
- (4) 광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면의 자원 및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5) 면허/허가에 따라 광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법인과 협력할 수 있는 권리
- (6) 면허/허가 존속기간 동안 관할당국으로부터 광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할 권리
- (7) 관할당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60일 이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 (8) 관련 법률에 따라 광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교량, 철도, 전기공급시설 및 기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권리
- (9) 탐사면허권자나 생산면허권자의 경우 관할당국이 발급한 인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광업활동 수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광업법 제27조).

면허/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광업법 제39조).

- (1) 광업법, 광업법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기준, 지침 등 제반 하위규정 및 면허/허가조건을 준수할 의무
- (2) 광업활동 개시 전후에 광업활동을 위한 기술, 경제, 환경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관할당국에 제출할 의무

- (3) 면허 효력 발생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광업활동에 착수할 의무
- (4) 광업장부(Mining Book) 및 광업대장(Mining Cadastre)에 기재하기 위해 광업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유지하고 관할당국에 이를 제출할 의무
- (5) 환경 및 근로자 산업안전을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사 내용을 관할당국에 보고할 의무
- (6) 관할당국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 및 광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비밀정보를 유지할 의무
- (7) 광업활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을 의무
- (8) 광업활동 중 "광산의 꽃(Mine's flower)"이라 불리는 미학적 결정체의 자연적 결합물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고 관할당국에 보고할 의무
- (9) 광권이 종료되는 경우, 관할당국에게 허가 받은 지역을 반환할 의무
- (10) 정해진 일정에 따라 관할당국이 서면으로 요구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
- (11) 광업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의 환경복구를 수행하고 완료할 의무
- (12) 광업지형 규칙(Mining Topography Rules)에 따라 필수적인 지형학적 수치를 갱신하고 광업활동 중 수행되는 모든 작업을 완료할 의무
- (13) 광업활동 중 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유해 물질을 수송, 사용, 처리 및 저장하지 않을 의무
- (14) 내륙의 수로 지역에서 광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항만 및 수송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의 승인을 취득할 의무
- (15) 보건 분야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이 제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16) 면허/허가가 종료되는 경우 사전에 협의된 계획에 따라 “폐쇄 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광산의 유지·보수·폐쇄 작업을 수행할 의무
- (17) 면허에 규정된 기술 교육 및 이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
- (18) 사회보장 조치를 준비하고 재정 기반을 마련할 의무
- (19) 전체 개발 기간 동안 환경복구를 위한 재정을 유지할 의무
- (20) 광업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광업활동과 관련된 조세 및 수수료,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

8) 광업 관련 조세·로열티

가) 조세

면허/허가 보유자는 루마니아 정부에 광물 자원의 조사, 탐사, 개발 활동과 관련된 조세(Tax) 및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조사활동에 대한 연간 조세는 Km^2 당 25,000 레이(Lei)¹³이고, 탐사활동에 대한 연간 조세는 Km^2 당 100,000 레이(Lei)이다. 이러한 조세는 활동 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2배가 되며, 4년 이후부터는 5배로 증가한다. 생산활동에 대한 연간 조세는 Km^2 당 25,000,000 레이(Lei)이다. 이들 조세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므로, 그 다음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조세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광업법 제44조).

¹³ 2012년 11월 26일 현재 1 RON은 0.28 USD이다.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나) 로열티

루마니아 정부에 지급할 로열티는 생산물 생산량에 따라 결정된다. 로열티는 생산이 개시된 날부터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매 분기 첫째 달 20일 이전까지 분기별로 선납한다(광업법 제45조).

비율	종류
0.2 Euro	천연광천수(가스성과 비가스성), 치료용 광천수
2%	석탄, 철광석 및 비철광석, 알루미늄 광석 및 광물, 귀금속, 희유금속, 방사성 금속, 희귀금속, 보석 또는 준보석, 토탄, 진흙과 치료용 토탄, 역청탄, 비가연성 가스, 지열수, 지열수와 관련된 가스 등
6%	비금속 유용광물(단, 오토멘틀 광석의 경우 10%)
6%	유용암석
8%	소금

면허/허가권자는 로열티 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관할당국에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광업법 제46조). 한편, 조세 및 로열티를 적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루마니아 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광업법 제47조)

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광업법에 정하고 있는 수수료, 조세, 로열티 이외에도 루마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은 사업자는 16%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루마니아에서 과세 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 사용료, 용역료, 배당, 자문료, 수수료, 청산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루마니아는 OECD 모델조세조약에 기초하여 전세계 8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한국과 루마니아간에도 1993년 10월에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었다. 위 협약에 따라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그리고 루마니아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세, 배당세가 협약 적용 대상 조세로서 세율이 감면되며, ‘외국세액 공제방식’에 따른 국내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한국과 루마니아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적용세율을 포함하여 루마니아 투자시 경유지국으로 자주 이용되는 국가들의 이중과세방지협약상 세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양도소득
오스트리아	0/5	0/3	3	X
핀란드	5	5	2.5/5	X
아일랜드	3	0/3	3	X
네덜란드	0/5/15	0/3	0/3	X
싱가폴	5	5	5	X
대한민국	7/10	0/10	7/10	10

출처: PWC, The Romanian Tax Pocket Book, 2012 Edition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라) 이중과세의 조정

한국법인이 루마니아에서 부담한 세액은 한국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으로써 이중과세가 조정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크게 (1) 한국법인이 루마니아 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를 공제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2) 루마니아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액 중 [법인세 X 한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 루마니아 법인의 세후소득금액 X 50%]로 계산된 금액을 한국법인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다.

특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법인이 루마니아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직접 출자하여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한편, 외국자회사가 외국손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한국법인의 외국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외국손자회사가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9) 광산의 폐쇄

생산 중인 광산 또는 채석장은 (1) 생산 가능한 자원이 고갈되거나, (2) 자연 재해나 사고 등으로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광업활동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개발을 계속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광업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 중 하나가 발생하고 법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허권자는 관할당국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생산 중단을 위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광업법 제51조). 광산 및 채석장 폐쇄가 완료될 때까지 면허/허가권자는 폐쇄계획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광업법 제53조 제2항).

10) 관할 정부기관

광업법에 따른 관할당국은 루마니아 국가광물자원국(National Agency for Mineral Resources, NAMR)이다(광업법 제54조). 국가광물자원국은 광업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권한을 보유한다(광업법 제55조).

- (1) 국가 소유의 광물자원 및 국가지질기금 관리
- (2) 면허/허가 조항 및 조건 설정, 광업 면허/허가 발급, 규범, 규칙, 기술지침을 통한 광업활동 규제
- (3) 광물 자원 및 매장지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수령, 확인, 등록, 국가지질자원 관리 및 국가광물 자원/매장지 자원 설정
- (4) 로열티 결정
- (5) 광산 로열티 산정을 위한 광물 생산량 감독 및 확인
- (6) 허가 지역을 벗어난 광업활동, 승인된 기술적 증빙 서류 없이 행하는 광업활동 관련하여 시정 조치가 있을 때까지 광업활동 정지명령
- (7) 면허/허가권자의 면허/허가 규정의 준수 확인
- (8)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광업법 적용을 위한 규범 및 기술지침 제정
- (9) 광업법 규정의 이행 위반 조사 및 통지
- (10) 광업활동 관련 법률안 및 정부 결의안 작성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1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면허/허가권자가 광업법에 규정된 의무 및 해당 면허/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다음의 벌금(Fine)을 부과한다(광업법 제57조 제1항). 한편, 광업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 내용을 재차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벌금 최대액의 2배를 부과한다(광업법 제58조 제1항)

위반 내용	벌금액(레이 Lei)
① 생산면허를 취득한 외국 법인의 경우 생산면허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루마니아에 지점을 개설하고 면허 존속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 위반 ② 광업활동 개시 전 및 활동기간 동안 광업활동을 위한 기술, 경제, 환경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할 의무 위반 ③ 면허 효력발생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광업활동을 개시할 의무 위반 ④ 광업장부(Mining Book) 및 광업대장(Mining Cadastre)에 기재하기 위해 광업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유지하며 이를 관할당국에 제출할 의무 위반 ⑤ 환경 및 근로자 산업안전을 관할하는 지방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내용을 관할당국에 보고할 의무 위반 ⑥ 관할당국 및 주주관청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 및 광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비밀정보를 유지할 의무 위반 ⑦ 광업활동 중 "광산의 꽃(Mine's flower)"이라 불리는 미학적 결정체의 자연적 결합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 관할당국에 보고할 의무 위반	30,000,000 ~ 60,000,000
① 광업법의 규정, 광업법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기준, 지침 및 면허/허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 ② 면허 효력발생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광업활동에 착수할 의무 위반 ③ 광업활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관할당국의 승인을 취득할 의무 위반 ④ 정해진 일정에 따라 관할당국이 서면으로 요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위반 ⑤ 광업지형 규칙(Mining Topography Rules)에 따라 필수적인 지형학적 수치를 갱신하고 광업활동 중 수행되는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할 의무 위반 ⑥ 내륙의 수로 지역에서 광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항만 및 수송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의 승인을 취득해야 할 의무 위반 ⑦ 보건 분야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이 제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 위반 ⑧ 전체 개발기간 동안 환경복구를 위한 재정을 유지할 의무 위반	60,000,000~200,000,000
① 관할당국이 승인한 구역 내에서만 광업활동을 수행할 의무 위반 ② 광업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의 환경복구를 수행하고 완료할 의무 위반 ③ 광업활동 중 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한 물질을 수송, 사용, 처리 및 저장하지 않을 의무 위반 ④ 면허/허가가 종료되는 경우 “폐쇄 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광산/채석장의 유지보수/폐쇄 작업을 수행할 의무 위반 ⑤ 광업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광업활동과 관련된 조세 및 로열티 지급 의무 위반	200,000,000~500,000,000

면허/허가에 의하지 않은 광업활동 수행은 범죄를 구성하며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광업법 제57조 제2항). 광업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광업법 제58조 제2항).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12) 분쟁해결

면허/허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분쟁은 광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루마니아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중재 및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광업법 제61조).

다. 석유¹⁴법(Petroleum(Oil) law No. 238/2004)

1) 석유자원의 개념과 그 소유

국제법 원칙과 국제규범에 따라 경계가 획정되어 있는 루마니아의 영토, 루마니아의 지하구역, 루마니아에 귀속된 흑해 내 대륙붕에 위치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은 배타적으로 공공재산의 대상이며, 이들은 루마니아 정부에 귀속된다(석유법 제1조). 석유법에 따른 석유가스사업(Petroleum Operations)이란 모든 석유 및 가스 광구 탐사, 개발, 생산, 저장,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 및 통과, 터미널 운영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석유법 제2조)

석유법에 따라 루마니아법인 또는 외국법인은 관할당국이 승인한 구역 내에서 석유가스사업을 영위한다(석유법 제3조).

2) 석유가스사업을 위한 토지이용권

석유가스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매매, 교환, 임대차, 수용, 토지사용승인(Cession) 등의 방법으로 취득될 수 있다(석유법 제6조). 탐사 또는 생산광구에 출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활동을 위해 면허권자에게 지역권이 발생한다. 다만 지역권의 행사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간 사용료 지급을 요건으로 한다. 면허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한 후 60일 이내에 사용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석유가스사업 기간과 동일하며, 지역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석유법 제7조). 다만, 위와 같은 지역권을 초과하는 토지이용권은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1) 매일 파이프라인 주변을 확인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영구이용권이 부여되며, (2) 파손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작업이나 정기적 수리작업의 경우에는 임시이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석유법 제9조). 한편, 석유가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면허권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석유가스사업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보유한다(석유법 제10조).

3) 석유 양허권(Petroleum Concessions) 및 존속기간

가) 탐사단계

탐사허가(Prospecting Permits)는 비배타적으로 부여되며, 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지역 내에서 단독으로 탐사활동을 수행한다. 탐사허가는 최대 3년 기간으로 부여될 수 있으나, 갱신권은 보장되지 않는다(석유법 제28조). 관할당국은 석유가스사업 수행을 위해 양허되는 광구목록을 확정하고, 해당 광구목록은

¹⁴ 석유법에서 말하는 Petroleum에는 석유 및 가스가 포함된다.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루마니아 공식 관보에 게재된다(석유법 제29조).

나) 생산단계

석유법에 따라 모든 석유가스사업은 관할당국에 의해 양허된다(석유법 제27조 제1항). 양허는 관할당국과 루마니아법인 또는 외국법인간 체결된 석유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양허기간은 최대 30년으로, 15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석유법 제27조 제2항). 관할당국이 주관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은 자가 관할당국과 석유계약을 체결한다(석유법 제30조).

모든 석유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정부가 이를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석유계약의 규정은 계약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석유법 제31조). 관할당국은 서면으로 석유가스사업의 개시를 승인하여야 한다(석유법 제32조). 한편, 석유가스사업 수행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경우 석유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루마니아에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개설하여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석유법 제33조)

다) 석유 계약의 종류

석유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석유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탐사/개발/생산 석유계약
- (2) 개발/생산 석유계약
- (3) 생산 석유계약
- (4) 개발 석유계약
- (5) 천연가스 저장 석유계약¹⁵
- (6) 국가파이프라인 시스템 양허 관련 석유계약
- (7) 석유가스 터미널 양허 관련 석유계약

4) 석유계약 양도

석유계약의 권리자는 관할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석유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일체를 법인인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관할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양수도는 무효이다. 석유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양수도에 대한 승인은 양수인이 석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있고, 석유계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의무의 인수를 파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편, 석유계약 권리자의 법적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계약당사자의 지위는 법적 승계인에게 이전되는데, 법적 승계인이 석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있음이 증명된 때에 관할당국의 대표가 승인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계약상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다(석유법 제34조).

관할당국으로부터 석유계약 양수도에 관한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양수인은 석유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¹⁵ 천연가스 저장 관련 사업은 국가광물 자원국 석유 계약과 루마니아 에너지규제청 면허가 모두 필요하다.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 ① 석유계약이 유효해야 한다.
- ② 석유계약에 따른 지위는 루마니아법인 또는 루마니아에 법적 실체가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일체의 조세 및 부담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 ③ 양수인이 석유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적·기술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 ④ 양도인은 석유계약에 명시된 양허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⑤ 양수인은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석유가스사업 운영에 관한 기술적 능력을 보유한 공인된 회사를 운영사로 선임해야 한다.

5) 양허권의 소멸

석유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허권의 소멸사유는 아래와 같다(석유법 제37조).

- (1)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 (3) 관할당국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 (4)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권리자가 계약에 명시된 의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되고 권리자가 이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양허권은 계약기간 연장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부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한 석유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소멸한다(석유법 제39조). 한편, 양허권이 소멸되는 즉시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광구 일체가 정부 재산으로 귀속되며, 이 경우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할 필요나 의무가 없으며, 광구에 설정된 부담이나 제한이 있는 때에는 권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6) 양허권의 정지

석유계약의 권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관할당국의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도 이러한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관할당국은 양허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석유법 제41조 제1항). 정지가 고지된 때로부터 정지사유가 치유될 때까지 최대 1년간 해당 계약의 효력은 정지된다(석유법 제41조 제2항).

- ① 석유가스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② 도산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③ 석유가스사업 수행 방식이 미래의 석유가스 생산에 위협이 되거나 매장지 보호 및 산업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④ 근로자 건강 및 산업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7) 석유계약의 해지

관할당국은 권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석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석유법 제42조)

- ① 석유가스사업 개시일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 ② 관할당국의 동의 없이 60일 이상 석유가스사업을 중단한 경우
- ③ 과학기술 생산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④ 법률에서 명시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하거나 환경보호에 관한 인허가 또는 근로자 산업안전에 관한 승인이 취소된 경우
- ⑤ 고의로 관할당국에 석유가스사업과 관련된 허위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면허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루마니아 정부에 납부해야 할 로열티를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
- ⑦ 석유계약에서 양허권 취소사유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⑧ 석유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작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⑨ 양허권이 정지된 원인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

관할당국이 해당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권리자에 대하여 석유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석유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결정은 루마니아 공식 관보에 공고 되며, 해당 사항은 관할당국이 관리하는 석유장부에도 기재된다.

석유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권리자는 다음의 책임을 부담한다(석유법 제46조).

- ① 권리자는 석유가스사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자가 손해의 발생사실을 석유계약 해지 이후 알게 된 때에도 같다.
- ② 석유가스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복원에 관한 금전적 책임을 부담한다.

8) 권리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자는 석유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석유법 제47조).

- ① 석유계약에 명시된 광구 경계 내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고 접근할 권리
- ② 석유 개발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석유 파이프라인, 항만, 도크 및 기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③ 광구 경계 내에서 석유계약에 명시된 모든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 ④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면의 자원 및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⑤ 석유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석유를 자유로이 처분(수출권 포함)할 권리
- ⑥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석유 분리 및 처리 시설, 리프팅 플랫폼, 배급-수령 지점 및 고객에게 배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등 석유 수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권리
- ⑦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석유가스사업 수행에 필요한 도로, 다리, 또는 궤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또는 설치할 권리
- ⑧ 석유가스사업 수행 중 석유나 가스 다른 유용광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 유용광물의 생산면허를 우선하여 신청할 권리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 ⑨ 양허기간 동안 관할당국으로부터 광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⑩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법인과 협력할 수 있는 권리
- ⑪ 석유계약 존속기간 동안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할당국이 소유한 석유가스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열람하고 사용할 권리
- ⑫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권리
- ⑬ 관할당국의 사전 승인을 취득한 후 석유저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및 저장면허를 취득한 후 독자적으로 석유저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 ⑭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석유법 제37조).

권리자는 석유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석유법 제48조)

- ① 광업법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기준, 지침 및 석유 계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② 석유가스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 경제, 환경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
- ③ 관할당국이 정한 석유가스사업 관련 정보 및 서류를 확보, 작성, 업데이트하고 지정된 일정에 따라 이를 제출할 의무
- ④ 환경 및 근로자 산업안전을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그 조사내용을 관할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
- ⑤ 관할당국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 및 석유계약을 통해 취득한 비밀정보를 유지할 의무
- ⑥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하던 중 해당 구역 및 인접 구역 지하수의 연결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접 구역 소유권자들과 협력할 의무
- ⑦ 양허권 소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당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
- ⑧ 관할당국이 서면으로 요구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
- ⑨ 석유가스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의 환경 복구를 수행하고 완료할 의무
- ⑩ 내륙 수로 지역에서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항만 및 운송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취득해야 할 의무
- ⑪ 석유계약에 규정된 기술 교육 및 이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
- ⑫ 석유법에 명시된 기한에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

9) 요금(Tariffs)과 로열티

개발/생산 및 생산 석유계약의 권리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생산량에 기준가격(관할당국이 정한다)을 곱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여야 한다(석유법 제49조).

비율 %		순생산량 원유/콘덴세이트 (천 톤/분기)
3.5%	생산광구	10 이하
5%	생산광구	10~20
7%	생산광구	20~100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13.5%	생산광구	100 초과
%		천연가스 (1백만 톤/분기)
3.5%	생산광구	10 이하
7.5%	생산광구	10~50
9%	생산광구	50~200
13%	생산광구	200 초과

로열티는 석유가스사업 개시일로부터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분기 첫째 달 25일 이전까지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석유법 제49조). 로열티는 국고에 귀속된다. 루마니아 재정법에 따라 루마니아에서 생산된 석유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공급 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생산품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석유생산자가 보유한 석유정에 대한 재산세도 면세대상이다.

10) 관할당국

석유법에 따른 관할당국은 루마니아 국가광물자원국(National Agency for Mineral Resources, NAMR)이다(석유법 제53조). 국가광물자원국은 석유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석유법 제54조).

- ① 국가 소유의 석유 광물 자원 관리
- ② 국가를 대리하여 석유계약의 협상 및 체결
- ③ 석유계약 조건, 기술적 표준 및 지침에 따른 석유가스사업의 규제
- ④ 석유가스 자원의 저장, 시스템화,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확인 및 등록
- ⑤ 루마니아에서 생산된 석유 및 가스의 기준가격 결정, 원유 및 파이프 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석유의 과세 기준 가격 설정
- ⑥ 로열티 산정을 위한 석유 생산량 감독 및 확인
- ⑦ 석유가스사업 수행 기간 중 지표 및 지하구역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감독
- ⑧ 권리자의 석유계약, 관련 법규, 지침, 명령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⑨ 허가 지역을 벗어난 탐사/생산 활동, 승인된 기술적 증빙 서류 없이 수행된 석유가스사업에 대하여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석유가스사업 정지명령
- ⑩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석유법 적용을 위한 규범 및 기술지침 제정
- ⑪ 석유장부(Petroleum Book)의 기록 및 유지
- ⑫ 관련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석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관할 정부기관에 통지
- ⑬ 환경 복구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폐쇄 계획 및 양허권 종료 승인

1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권리자가 석유법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석유계약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벌금(Fine)이 부과될 수 있다(석유법 제56조). 한편, 아래의 불법행위가 2회 반복되면, 1,000,000,000 레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벌금 최대액의 2배가 부과된다(석유법 제

1.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

58조).

내용	벌금액(레이, Lei)
① 석유가스사업 양허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경우 석유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루마니아에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할 의무 위반 ② 석유가스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 경제, 환경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 위반 ③ 관할당국이 정한 석유가스사업 관련 정보 및 서류를 확보, 작성, 업데이트하고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할 의무 위반 ④ 관할당국이 서면으로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에 이행할 의무 위반	150,000,000 ~ 300,000,000
① 석유가스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자신의 이해를 위해 서만 사용할 의무 위반 ② 관할당국의 승인 없이 석유자원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의무 위반 ③ 석유가스사업 기간 동안 자료 및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④ 석유가스사업 수행 방식이 미래의 생산에 위협이 되거나 매장지 보호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석유가스사업 개시일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⑥ 관할당국의 동의 없이 60일 이상 석유가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⑦ 법률에서 명시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하거나 환경 보호 허가/승인 및/또는 근로자 산업안전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⑧ 광업법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기준, 지침 및 석유 계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 ⑨ 석유가스사업을 수행하던 중 해당 구역 및 인접 구역 지하수의 연결이 확인된 경우 관할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접 구역 소유권자들과 협력할 의무 위반	300,000,000~ 700,000,000
① 관할당국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 및 석유계약을 통해 취득한 비밀정보의 유지 의무 위반 ②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장부 작성 의무 위반	700,000,000~ 1,000,000,000

허가 또는 석유계약에 의하지 않은 석유가스사업 수행은 범죄이며,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석유법 제57조).

12) 분쟁해결

석유법에 따라 석유 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중재합의가 없는 한 루마니아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당사자들은 국제중재법원을 포함한 중재합의를 할 수 있다(석유법 제62조).

4. 결론

루마니아는 유럽의 전통적인 자원부국으로, **1857년**에 세계최초로 석유 생산을 하였으며, **1909년**에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하였다. 루마니아에서는 **1970년~1980년**에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최고점에 달했는데,

PART. 1 미개척지역 자원개발법제 연구

1976년에는 14억톤의 석유를 생산하였고, 1986년에는 394억 m^3 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다.¹⁶ 그 이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국내 수요의 일부분만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루마니아는 유럽국가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여러 종의 광물이 부존·생산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루마니아는 2007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자원개발 법제를 포함한 자국의 법제를 EU 법규에 부합하도록 제·개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 외국인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광업법에 따라 발급된 탐사 및 생산면허는 2008년 기준 약 1600여건을 상회하게 되었다. 최근 제정된 신 에너지 가스법을 통해 확인되듯이 EU에 가입한 이후 루마니아 정부는 자원 및 에너지 시장의 완전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 및 에너지 관련 국영기업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은 6대 전략광물과 2대 신전략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최근 몇 년간 해외 자원개발 투자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국가위험도가 높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EU 회원국인 루마니아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동유럽 국가의 자원개발 법제 및 실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가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¹⁶ Romania National Agency for Mineral Resources (2009), *Petroleum E&P in Romania – Achievements and Expectations*